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11. 30 선고 2021나34122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11. 30 선고 2021나34122 판결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4. 6 선고 2020가단13424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A

피고, 피항소인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

담당변호사 임남구

변론 종결2021. 10. 19.

판결 선고2021. 11. 30.

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4. 6. 선고 2020가단13424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63,648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9. 2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 제1심에서 63,648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9. 2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,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확장하였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변경한다. 청구취지와 같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조우연

판사이준철

판사한성진